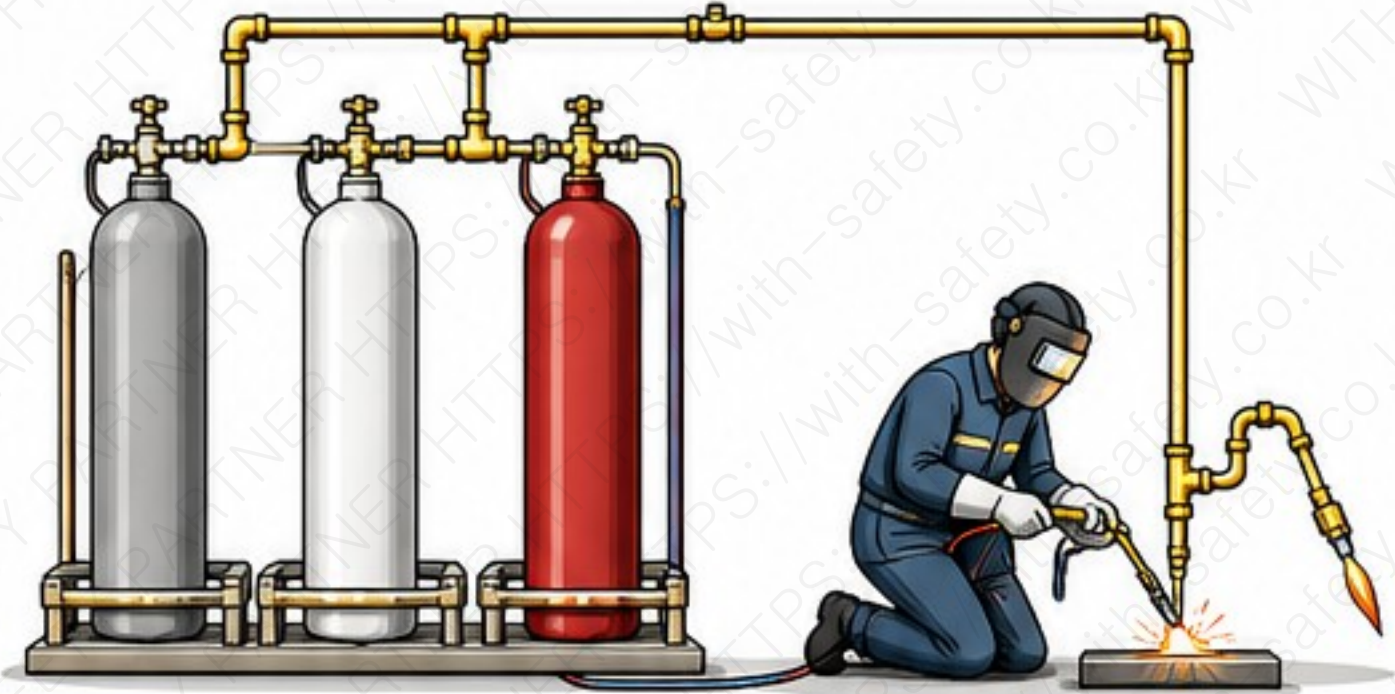


우리 사업장의 가스집합용접장치도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일까요?

용접·용단 작업에 사용하는 인화성가스를 여러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배관으로 연결하여 공급하는 고정식 설비는 조건에 따라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
1 가스집합용접장치란?

용접 또는 용단 작업에 사용하는 인화성가스를 여러 개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저장하고, 이를 배관을 통해 작업장으로 공급하는 고정식 설비를 말합니다.



2 언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할까요?

인화성가스의 집합량이 1,000kg 이상인 경우 제출 대상입니다.



3 용단 작업만 하는 경우에도 제출 대상일까요?

네, 용접뿐만 아니라 용단 작업에 사용하는 설비도 포함됩니다.



4 인화성가스 집합량은 어떻게 확인할까요?

저장용기·저장탱크 용량, 실제 저장량, 가스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실제 질량(kg)으로 산정하여 판단합니다.



5 기존 가스집합용접장치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기존 설비라도 주관(배관)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다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주요 구조부분 변경 사례

- ✓ 가스 공급 주배관을 변경하는 경우
- ✓ 주배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
- ✓ 기존 배관 계통을 변경하여 가스 공급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

단순한 유지보수나 동일 규격 부품 교체는 변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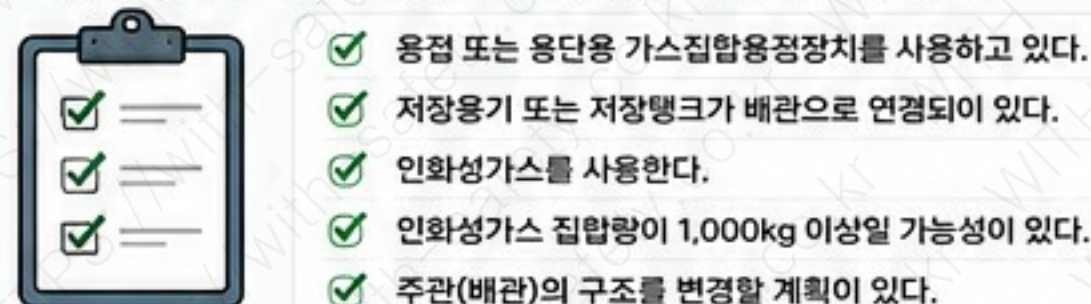
6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

- ✗ 가스를 사용하면 모두 제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.
- ✗ 용접만 해당되고 용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.
- ✗ 저장탱크의 크기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한다.
- ✗ 기존 설비는 신규 설치가 아니므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.
- ✗ 주관(배관)을 변경해도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.



7 제출 대상 체크리스트

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!



8 설비 설치 전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.

설계 및 설치 계획 단계에서 제출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
9 참고사항: 일부 사업장은 심사·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「기업합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,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·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

특례 적용은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, 적용 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0 안전파트너 워드가 함께합니다!

가스집합용접장치와 관련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부터 기술검토 및 심사 대응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.



신규 설치나 기존 설비 변경 계획이 있다면 착공 전에 꼭 확인하세요!